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870
----------	------

제안년월일: 2020년 9월 4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659호)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733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사유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을 조정하고 같은 날 여러 운행제한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며, 시민의 구제권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에는 조례에서 정한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도록 규정함.
- 나. 조례와 타 법령(「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혹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정한 각각의 운행제한 조치를 동일한 날 위반한 자동차가 타 법령에 따른 운행제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본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대기법”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대기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시·도 조례”를 “시·도 조례 또는 시·군의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기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저공해엔진 개조·교체”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동차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운행 제한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무인단속시스템”을 “단속시스템(차량에 장착된 단속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를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인단속시스템”을 “단속시스템”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부과·징수 및 감면”을 “부과·징수, 감면 및 이의제기”로 한다.

④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운행제한 위반일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일련번호 : <span style="float: right;">운행제한 위반 통지서</span>				
소유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차명		차대번호	
	총중량(kg)		배기량(cc)	
	운행장소		운행일시	
	단속방법	단속시스템 단속, 단속공무원 단속		
<p>「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단속되었기에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발급합니다.</p> <p>※ 처음 1회 위반 시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하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p> <p>※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년    월    일 까지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9)</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장</b> 인</p>				
※ 첨부 : 위반사실 근거자료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써 「<u>대기환경보전법</u>」(이하 “<u>대기법</u>”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p> <p>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u>대기법</u>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p> <p>4.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u>대기법</u> 제58조에 따라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p> <p>5.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u>대기환경보전법</u>」 ----- ----- -----.</p> <p>3. ----- ----- ----- ----- 「<u>대기환경보전법</u>」 ----- -----.</p> <p>4. ----- ----- ----- 「<u>대기환경보전법</u>」 ----- -----.</p> <p>5. (현행과 같음)</p>
<p>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①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p>	<p>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① ----- ----- ----- ----- -----.</p>

현행	개정안
<p>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생략)</p> <p>2. <u>대기법</u> 제58조제1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u>시·도 조례</u>로 정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이행기한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p> <p>3.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u>대기법</u>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p>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운행제한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u>저공해엔진 개조·교체</u>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대기환경보전법</u>」----- ----- <u>시·도 조례</u> 또는 <u>시·군의 조례</u>----- ----- ----- -----</p> <p>3. ----- ----- ----- ----- 「<u>대기환경보전법</u>」 ----- ----- ----- -----</p> <p>② ----- ----- <u>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u>----- ----- ----- -----.</p>

현행	개정안
<p>③ (생략)</p> <p>〈신설〉</p> <p>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p> <p>① 시장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 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p> <p>① ~ ③ (생략)</p> <p>〈신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동차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p> <p>① ----- ----- ---- 단속시스템(차량에 장착된 단속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p> <p>② ---- 단속시스템 ----- ----- ----- ----- ----- 발급-----.</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운행</p>



현행	개정안
<p>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u>부과·징수 및 감면</u>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p><b>【별지 제1호 서식】</b></p>	<p><u>제한 위반일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1. 「<u>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u>」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u>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u></p> <p>2. 「<u>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u>」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u>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u></p> <p>⑤ ----- <u>부과·징수, 감면 및 이의제기</u> ----- -----.</p> <p><b>【별지 서식】</b></p>

## 현 행

일련번호 :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

소유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차명	차대번호		
	총중량(kg)	배기량(cc)		
	운행장소	운행일시		
	단속방법	<b>무인단속시스템</b> , 단속공무원 단속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단속되었기**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 처음 1회 **위반시에는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 동안 행정지도하나 그 이후 위반시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로 **제출(또는 FAX 02-2133-1025)바랍니다.**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9)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첨부 : 위반사실 근거자료

210mmx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개 정 안

일련번호 :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

소유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차명	차대번호		
	총중량(kg)	배기량(cc)		
	운행장소	운행일시		
	단속방법	<b>단속시스템 단속</b> , 단속공무원 단속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단속되었기에**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처음 1회 **위반 시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하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9)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첨부 : 위반사실 근거자료

210mmx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